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14일, 이상식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8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11.27.)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가결)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8.)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상식 의원)

현행법은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공공성이 중시되는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개정안은 현행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규정 외에 “직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규정도 추가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0조)

결격사유란 특정 신분이나 자격, 인허가 등을 취득하는데 제한이 되는 사유로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행정기본법」은 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결격사유와 연동된 당연퇴직, 자격박탈, 인허가 등의 취소 규정 또한 해당 신분·자격·인허가 등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는 점에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상 법률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공사·공단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반면, 직원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여 대부분의 지방공사·공단이 이를 정관 또는 하위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과 같이 지방공사·공단 직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임.

첫째,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도록 법체계를 개선하는 것으로서, 지방공사·공단의 직원 채용시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둘째, 현재 개별 지방공사·공단마다 직원 결격사유를 따로 정하면서 일부 중요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대부분의 지방공사·공단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결격사유를 참고하여 직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2022년 12월 27일 같은 법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결격사유에 추가된 “정보통신망 이용 음란영상 배포 등 범죄자”(「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3나목) 및 “스토킹 범죄자”(같은 호 다목)는 2023년말까지 대부분의 지방공사·공단이 반영하지 않았음. 이에 개정안과 같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결격사유를 지방공사·공단 직원의 결격사유로 일괄 규정하면 향후 이러한 누락을 방지하고 기관 간 통일성도 확보할 수 있음.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공단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직원의
결격사유 및 당면퇴직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데 찬성하고 있으며,

추가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직원 채용시 경찰에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임직원 채용시 경찰에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붙임] 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2.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지방공사·공단 직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공사·공단 임직원 채용시 경찰에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 신설(수정)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0조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 공사에 제공할 수 있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 ----- ----- ----- <u>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u>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개정안과 같음)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③ <u>공사의 직원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u>	③ (개정안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임직원----- ----- -----	④ 제2항 또는 제3항----- <u>임직원</u> ----- ----- -----

	--- <신 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 정하여 본인의 동 의를 받아 경찰청 장에게 「형의 실 효 등에 관한 법 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 청하여 공사에 제 공할 수 있다.
--	----------------------------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 제목 중 “임원”을 “임직원”으로, “결격사유”를 “결격사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없다”를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를 “어느 하나(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임원”을 “임직원”으로 한다.

③ 공사의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 공사에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공사의 직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u>임원의 결격사유</u>)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60조(<u>임직원의 결격사유 등</u>) ① ----- ----- ----- <u>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u>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② ----- ----- 어느 하나(<u>제3호는 제외한다</u>)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
<신 설>	③ 공사의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 <u>임직원</u> ----- -----.
<신 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

	<u>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본인의</u> <u>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u> <u>「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u> <u>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u> <u>요청하여 공사에 제공할 수 있다.</u>
--	--